

의안번호	2208397
의 퇴 인	정성호의원
회 답 일	2025.4.16.
추계번호	25D1085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5(예비군권익보장센터)	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,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0조의5(예비군권익보장센터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휴무·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처우를 받았을 경우, 해당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러한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, 시정 및 징계요구, 이행결과 확인, 고발 및 사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건비, 기본경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[표 1] 불이익처우 신고·접수 시 업무절차(안)

구 분	업 무 소 요
신고접수 / 사실조사	· 신고내용 접수 및 사실조사 필요성 판단 (예비군법, 관련 법령, 해당 기관 행정규칙(사규) 검토) · 사실조사 계획 작성(현지조사 필요성 검토) / 보고 · 관련기관 의견조회서 작성 / 발송 · (현지조사 필요시) 출장 및 관계자 진술확보
시정 및 징계요구	·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및 사건 관련자 진술 검토 · 시정(징계)요구서 작성 / 보고 / 발송 * 필요시 (가칭) 시정요구판단위 개최
이행결과 확인	· 시정(징계)요구서 접수 확인 · 이행결과 접수 및 검토
고발 및 사후관리	· 고발심의서류 작성 및 보고 · 고발심의위원회 개최 및 고발

자료: 국방부

□ 다만, 현재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불이익처우 신고·접수는 국방부 본
 분 뿐만 아니라 각군, 병무청 등 여러 곳에서 받고 있고, 불이익처우 뿐
 만 아니라 기타 민원과 함께 국민신문고, 유선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신
 고·접수되고 있어 예비군 훈련 관련 불이익처우 신고·접수 현황 파악에
 어려움이 있음

-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관련 불이익처우 신고·접수된 건에 대해서 현재 일
 부 조사 및 시정, 징계요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조사권한 등 법적 근
 거 미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

[표 2]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 본부에 접수된 불이익처우 신고·접수 건수

	2022	2023	2024
접수건수	53	15	26

자료: 국방부

□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 관련 불이익 처우 신고·접수 현황을 파악하는데
 한계가 있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적정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
 이 부재하며, 개정안이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, 업무의 범
 위와 그 처리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

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
추계하기 어려움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